

##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 및 연구기반을 확충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본시설인 대학도서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연구문헌 검색 지원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학술정보자원”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정보, 특수자료 등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모든 정보자원을 말한다 (이하 “학술정보자원”이라 한다).
5. “사서직원”이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대학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정부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시설로 대학도서관이 이용되도록 대학도서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대학의 책무)** 대학의 장은 교육 및 연구기반을 확충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에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도서관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4. 사서직원 등 도서관 직원의 확보·양성·교육
  5. 도서관의 협력체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 ① 대학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대학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대학의 장이나 대학도서관 관련 단체에서 요청하는 내용 중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대학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단체(「민법」 중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도서관운영계획
2. 학술정보자원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학술정보자원의 제작·폐기
4. 대학도서관의 주요 사업 및 활동
5. 그 밖의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교육과학기술부에는 대학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 전담부서에는 사서직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지표로 활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2호에 따른 대학도서관 공시내용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도서관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제13조(대학도서관 관련 협회의 설립) ① 대학도서관 진흥 및 상호 협력, 직원의 자질 향상,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연합회 등(이하 "협회 등"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대학도서관 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대학도서관을 평가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대학별로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설 및 설비)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특성과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대학도서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사서직원 등) ① 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등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서관 자료) ① 대학의 장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적정 규모의 학술정보자원을 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술정보자원의 소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학술정보서비스) ① 대학의 장은 국내·외에서 생산한 각종 학술정보자원을 대학도서관에서 수집·보존·관리하여 교직원 및 학생 등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 등의 교육과 연구, 지식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지원서비스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학습지원서비스
4. 대학에서 생산한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 구축 및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서비스 제공
6. 기타 연구 및 학습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19조(이용자교육) 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이용자의 연구 및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교육을 실시한다.

1. 학술데이터베이스 이용교육
2. 대학도서관 소장 학술정보자원 이용교육
3. 도서관 시설 이용교육
4. 논문작성법 교육
5. 기타 교육·연구 및 학습 활동지원에 필요한 교육

제20조(대학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①대학도서관의 학술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국내·외 학술정보자원의 국가 사용권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권역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학술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통) ①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구축한 학술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유통하여야 한다.

②학술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유통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역사회 협력 및 봉사) 대학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대학의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도서관 소장 학술정보자원 및 시설의 개방
2. 학술정보자원 활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과 협력사업
4. 기타 지역사회 협력 및 봉사에 필요한 업무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 교육 및 연수, 제14조 대학도서관 평가 등 권한의 일부를 「학술진흥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관리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위임·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단체와 개인은 대학도서관의 설치·시설·자료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